

교회봉사생활지침

제1조 (목적) 이 지침은 본 대학교 학칙 제 1조와 동 제 28조 2항 2호 및 학칙 시행세칙 제18조 및 제19조가 규정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교회봉사생활에 관한 세부지침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대상) 이 지침은 본 대학교 전체 학생에게 적용된다.

제3조 (방법) 본 대학교 학생은 아래와 같이 교회봉사 생활을 하여야 한다. 본 대학교 학생은 6학기기간 교회봉사 생활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.

제4조 (교회봉사생활 내용) 교회봉사생활의 내용은 학과 및 학년별 지도 지침에 따르며 지도지침은 매 학기당 과제물과 함께 부여된다.

제5조 (교회 봉사 생활 평가) 교회 봉사 생활 평가는 다음과 같다.

- ① 교회봉사생활의 종합평가는 학급 담임교수가 담당한다.
- ② 교회봉사생활의 평가는 매학기 1회 개인별 종합 평가하여 그 평가서를 교무처에 통보하여 학적부에 기재토록 한다.
- ③ 평가는 P(합격), 또는 F(불합격)으로 한다.
- ④ 평가기준은 교회봉사생활 강의시간 출석성적 30%, 교회봉사생활 보고서 내용 30%, 교회봉사생활지의 평가내용 40%로 하여 합산하되 합계 60% 미만인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.
- ⑤ 교회봉사생활에 대한 평가서를(소정양식) 해당교회(기관)에서는 실습이 끝나는 대로 지도교수에 송부하고 학생은 자신의 실습보고서를 제출한다.
- ⑥ 모든 교회봉사생활 대상 학생은 입학(편입학)과 동시에 학생 교회봉사생활 상황 기록부를 기재하여 교역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- ⑦ 학생은 교회봉사생활 상황기록부를 필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.

제6조 (통제 및 조절) 교역처장은 교회봉사 생활 담당교수(담임교수)에게 학년별 교회봉사생활 세부지침을 정하여 시달하고 교회봉사생활 지도에 관한 회의를 소집한다.

제7조 (지침의 제정) 이 지침은 교수회의 결의로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.

제8조 (경과조치) 본 개정 지침은 198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

부 칙(1)

이 개정 지침은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